

A night cityscape with a purple grid overlay. The grid consists of concentric circles and radial lines, creating a mesh-like pattern over the city. The city lights are visible through the grid, and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purples and b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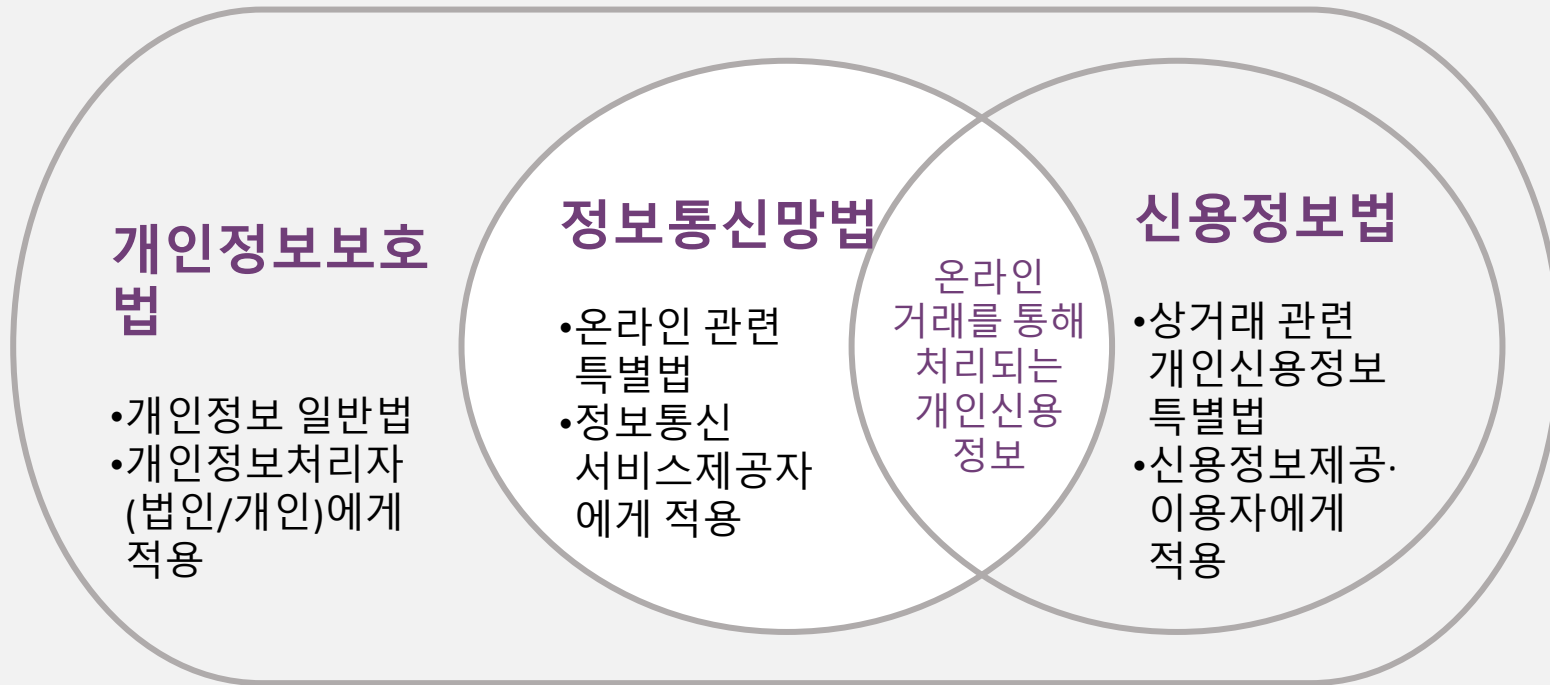
# 마이데이터 법률의 개요와 개념

# Privacy 규제 성격

- 데이터 3법 개정 전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음
  - 기업 법무 담당 임직원의 교양 과목 정도의 수준
- 데이터 3법 개정 후에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짐:
  -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 + 신사업 + 첨단기술 + 생소한 용어
  - 한 번 놓치면 이해하기 어려움. 아직 많은 분들이 데이터 3법 이전의
  - 지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Privacy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 수시로 법전을 찾아 보며 알 만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물어 보는 습관이
  - 중요함



# 1. 종래 데이터 3법의 관계



## 2. 데이터3법 시행 후 관계(2020.8.)

### 개인정보보호 법

- 개인정보 **일반법**
- 개인정보처리자  
(법인/개인)에게  
적용

### 신용정보법

- 상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  
**특별법**
- 신용정보제공·이용  
자에게 적용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 데이터 활용 측면

- 개인정보전송 요구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가명정보 활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 예외 추가

#### 정보주체 보호 측면

- 알고 하는 동의
- 쉽게 하는 동의
- 요약 동의
- 동의등급 제도
- 자동화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안전한 정보주체 보호의 균형을 도모함



## 4. 개인신용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 신용정보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명정보



# 4. 개인신용정보

## ◆ 신용정보란?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유형	법에 열거된 예시
식별정보 (결합 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b>개인의 신체 일부 특징을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등</b> → 생체정보 추가</li> <li>기업 및 법인의 정보로서 상호 및 명칭, 업종 및 목적, 개인사업자/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li> </ul>
거래내용 판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은행법상 신용공여, 여전법상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거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li> <li>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에 관한 정보</li> <li>보험업법에 따른 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li> <li>상법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 유형화</li> </ul>
신용도 판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기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한 정보</li> <li>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명의 도용 사실에 관한 정보, 보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 → 유형화</li> </ul>
거래능력 판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li> <li>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 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 등 → 개인 / 법인으로 구분</li> </ul>
유사정보 (공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li> <li>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li> <li>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li> <li>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등급 나타낸 정보</li> </ul>



# 5.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 가명/익명정보를 통해 Privacy 침해 감소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
-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관계

구분	개념	규제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①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A night cityscape with a purple grid overlay. The grid consists of concentric circles and radial lines, creating a mesh-like pattern over the city. The city lights are visible through the grid, and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purples and blues.

#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 1. 가명정보

- 개념 : 가명처리를 한 + 개인신용정보
- 가명처리란?
  -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 처리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함.
  -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추가정보 : 식별자를 임의의 대체값으로 암호화하는데 사용되었던 암호키. 대체값은 랜덤값 생성, 해시값 생성, 암호화 기법 등 활용 가능

\*\*구별과 식별의 차이

- 구별 : 성질이나 종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속성이 다른 속성과 구분되는 것

- 식별 : 분별하여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것



# 1. 가명정보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예시 (순서대로)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보험가입건수
권율	02-2345-6789	남	1990.3.26.	1
이순신	010-4567-9876	남	1993.11.3.	2
...	...	...	...	...

ID(대체값)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보험가입건수
9A00F1155584BA5DDFFFC4B6DDDBA	김희선	010-1234-5678	여	1974.10.1.	1
C2E6376B9035D7067C8B68F25FA39	권율	02-2345-6789	남	1990.3.26.	2
DACE2CCC9F459387EAE890D85344F	강수지	010-3456-4321	여	1969.5.28.	3

성명	전화번호	성별	나이	보험 가입 건수
권율	02-2345-6789	D	20대	1
이순신	010-4567-9876	D	20대	2
장동건	010-3698-5214	D	20대	3

(출처: 금융감독원,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내용 및 법률 위반사례)



# 1. 가명정보

- 가명처리 방법

ID(대체값)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보험가입건수
9A00F1155584BA5DDFFFC4B6DDDBA	김희선	010-1234-5678	여	1974.10.1.	1
C2E6376B9035D7067C8B68F25FA39	권을	02-2345-6789	남	1990.3.26.	2
DACE2CCC9F459387EAE890D85344F	강수지	010-3456-4321	여	1969.5.28.	3

-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을 조합하여 가명처리 기법 중 하나인 해시함수 적용
- 식별자 : 이름, 전화번호 삭제 (또는 가명으로 대체)
- 개인식별가능정보 : 개인식별 가능성 높은 것 중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면 삭제. 나머지는 적절한 수준의 추가 조치
  - 성별, 생년월일은 활용하되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성별, 생년월일 등은 일반화 처리도 가능 (예: 1974)
  - 가명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등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음.
  - 보험가입건수는 통계 정보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처리하지 않음.



# 1. 가명정보

- 추가정보 예시

<(예시) 랜덤값 생성을 통한 가명처리 예시>



- 랜덤값과 원본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 테이블이 추가정보



# 1. 가명정보

- 가명정보의 활용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공·활용 가능
- 가명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다만, 가명처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은 가명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많지 않은 것 같음.



# 1. 가명정보

- 가명정보 처리 절차
  -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의 위험도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① 사전준비	가명처리 목적을 명확화하고 가명처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가명처리 대상 추출하며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② 가명처리	가명처리 목적, 활용 주체, 가명처리·이용 환경,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측정, 가명처리 방법·수준 결정 및 가명처리 수행
③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추가처리	내부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가명정보의 개인식별 가능성 검토
④ 활용 및 사후관리	가명정보 이용·제공·결합 후 가명정보의 파기 등 행위규칙 준수

▶ 누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방법 /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함



# 1. 가명정보

- 가명정보 관련 행위 규칙
  -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 분리 보관**
  -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 보호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가명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
  - 가명정보 처리 조치 기록 3년간 보관





# 1. 가명정보

-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신용정보감독규정 [별표8])
- **추가정보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
  - 가명정보 취급직원의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받아 일시적으로 권한 부여 + 관련 기록 3년간 보관
  -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 **가명정보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 후 개인신용정보 분리하여 저장
  - 가명처리 취급직원 별도 지정 및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와 접근권한 구분
  - 가명정보 취급직원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받아 일시적으로 권한 부여 + 관련 기록 3년간 보관
  - 가명정보 처리 기록 3년 이상 보관 및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감독
  - 가명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마련

▶ 개인신용정보 - 가명정보 - 추가정보를 구분해라!



# 1. 가명정보

-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신용정보감독규정 [별표8])
- **관리적 보호조치**
  -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접근 취급자에 대한 가명정보보호교육 연 1회 이상 수행
  -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 여부 판단하여 필요 시 조정
  - 그밖에 신용정보감독규정 [별표3]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준용
-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준수 사항 → 데이터 제공 계약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
  -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 수령인, 활용목적, 이용 · 보존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주지시킬 것
  - 추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
  -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발견한 경우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취급종단 및 취급기록 유지기간 등 재식별



# 1. 가명정보

- 정보집합물의 결합

- 신용정보회사는 데이터전문기관(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을 통하여 자신 보유 정보집합물과 제3자 보유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할 수 있음

순서	세부 내용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집합물 간 정보를 연계/연동하기 위한 정보는 결합키로 대체</li> <li>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li> <li>정보집합물은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li> </ul>
정보집합물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달받은 복수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키 기준으로 결합 (결합된 결과물만 양 결합의뢰기관에 전달)</li> </ul>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의 선택에 따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추가로 수행 후 '적정'이 나올 때까지 적정성 평가 진행</li> </ul>
결합정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전문기관은 전달 전 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li> <li>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정보집합물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하여 전달</li> <li>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과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li> </ul>



## 2. 익명정보

- 익명처리란?
  -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익명처리 절차

익명처리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적정성 평가	적절하게 익명처리 하였는지 평가(적정성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신용정보회사는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사후조치	익명처리에 관한 기록 3년간 보관

▶ 익명처리 된 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가능



## 2. 익명정보

- 익명처리 방법

성명	전화번호	성별	나이	보험 가입 건수
권을	02-2345-6789	D	20대	1
이순신	010-4567-9876	D	20대	2
장동건	010-3698-5214	D	20대	3

- 식별자 : 이름, 전화번호 삭제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익명처리 후 사용)
- 개인식별가능정보 : 개인식별 가능성에 따라 조치 수준 결정
  - 다른 속성과 결합할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성별은 직접 알아 볼 수 없도록 코드 형태로 변환 (여성 -> C / 남성 -> D)
  - 다른 속성과 결합할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생년월일은 연령대로 범주화
  - 보험가입건수는 분석 대상이 되는 속성이고 다른 속성과 결합할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변환되지 않음.



A night cityscape with a purple grid overlay. The grid consists of concentric circles and radial lines, creating a network-like pattern over the city light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image.

#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 1. 개인정보 동의를 체계

-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수집 시 동의 원칙 및 예외 사유
  - 예외 사유로서 SNS 등에 공개된 공개정보 추가
-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제공·활용 시 동의 원칙과 예외 사유
-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목적 외 이용 시 동의 원칙과 예외 사유
  - 동의 없는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의 허용



# 1. 개인신용정보 동의 - 수집 동의 예외 사유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예외 사유 확대 :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을 기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추가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 1. 개인신용정보 동의 - 수집 동의 예외 사유

- 동의 예외 사유 확대
- 개인신용정보가 공개되거나 동의가 추단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함.
    -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 1. 개인정보 동의를 - 이용·제공 동의 예외 사유

- 동의 예외 사유 확대 → **추가 이용**
-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1. 개인신용정보 동의 - 고지 사항

- 고지 사항

-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확보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

## 수집·이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 항목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 제3자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 1. 개인정보 동의를 - 필수적/선택적 동의 사항 구분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 필수적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적/선택적 동의 사항 구분 시 고려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필수적 동의 사항
  -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함.
- 선택적 동의 사항
  -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1. 개인정보 동의 - 일반 원칙

- 동의의 원칙 : 쉽게, 단순하게 → **Informed Consent 보장**
  -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 1. 개인정보 동의를 요약 동의

- 요약 동의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부를 알려 주어야 함.
-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고지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부여된 정보활용 동의등급



# 1. 개인신용정보 동의 –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 •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 금융회사등은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경우 금융위가 평가한 등급을 알려야 함.
- 정보주체의 보호가 더 필요한 선택적 동의 사항에 한함.
- Informed Consent 의 내실화 → 위험한 등급의 동의서 사용 기업에게는 본인의 정보 제공을 꺼려하게 될 것임.
- 금융당국에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표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함.

### 콘텐츠 등급 분류와 유사함. 동의등급제 안내

안심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동의등급제는 개인(신용) 선택적 동의 항목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5가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통	카드 및 금융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다소안심	동의등급 확인하기 >
공통	카드 및 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보통	동의등급 확인하기 >
공통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안심	동의등급 확인하기 >
공통	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안심	동의등급 확인하기 >



# 1. 개인정보 동의를 위한 동의 및 동의 등급제 예시

## 예시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품서비스 안내 등)**

본 동의서는 요약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KB국민은행 귀중

정보활용 동의등급 
인심
다소인심
보통
신중
주의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해킹,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b>수집·이용 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및 서비스(포트폴리오 설계, 재무설계, 노후설계 등) 홍보·제공 및 판매 권유</li> <li>- 사은행사, 금융시장정보 제공 등 고객의 편의 제공</li> <li>- 경품지급</li> <li>- 고객 만족도 조사</li> <li>- KB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안내</li> </ul>
<b>보유 및 이용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li> </ul> <p>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p>
<b>거부 권리 및 불이익</b>	<p>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상품서비스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37개)	일반개인정보(14개)	신용거래정보(19개)	신용능력정보(4개)
	성명, 주소 등	상품종류, 거래유형 등	연소득, 선호자산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심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선택적 동의 사항
- ←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등급
- ← 개인정보 동의 시 고지 사항에 대한 범주화



(출처: KB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홈페이지)



# 1. 개인신용정보 동의 –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 금융위 동의 등급 부여 시 고려 사항 –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판단

항목	내용
소비자 위험도	•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
소비자 혜택	•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소비자 친화도	•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사항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했는지 여부 •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것인지 여부



## 2. 자동화 평가에 대한 대응

- 자동화평가란?
  -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
- GDPR 상의 개념
  - Profiling : 자연인에 관한 어떤 개인적 측면의 평가(특히, 그 자연인의 업무성과, 경제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도, 관심, 신뢰도, 행동양식,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분석 또는 예측을 말함)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그 구성 요소로 하는 여하한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
  - Automated Decision-Making :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로서 (사람의 개입없이) 오로지 그 처리만으로 그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 2. 자동화 평가에 대한 대응

- 대상
  -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 설명 요구권
  - 대상 기관에게 (1) 개인신용평가, 신용공여/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설정 등에 있어서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2)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자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자료 등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
- 정보주체의 추가 권리
  -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
- 정보주체 권리 행사의 제한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마이데이터 법률



# 1. 마이데이터

## • 마이데이터란?

-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한 것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핵심 기반인 산업
-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장점이 있음
- 데이터 개방활용 정도에 따라 0-4 단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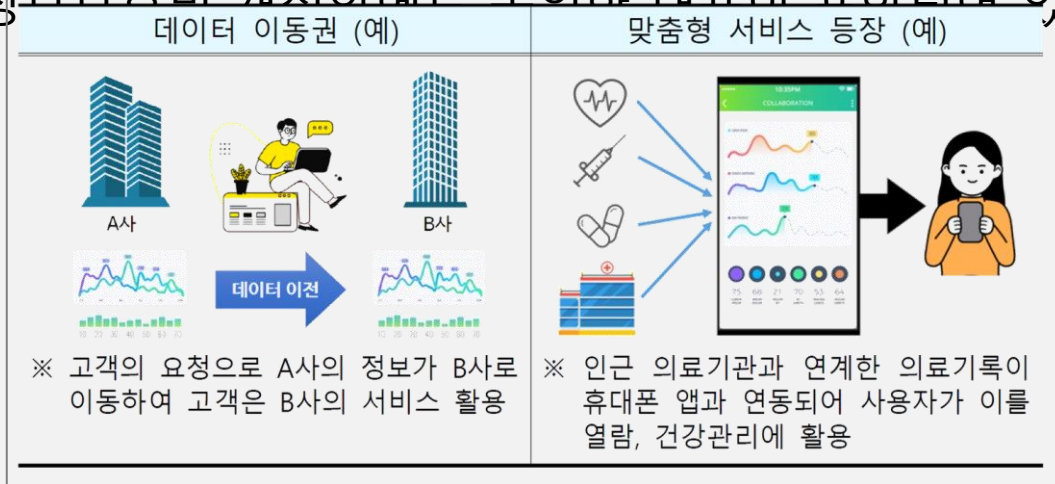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합동,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 2.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 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용정보주체의 적극적인 자기정보결정권행사를 보장하고 신용정보주체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도 도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관계부처합동,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 2.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정보
- 고려 사항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제공 받은 정보, 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간의 권리 · 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전송 대상 정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계좌정보, 보험정보, 금융투자 상품정보, 증권계좌 정보, 연금상품 정보, 보험대출 정보,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정보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보험료 납부 정보
  - 통신사에 대한 통신료 납부 정보, 소액결제정보



## 2.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전송요구 방법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요구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웹사이트, 앱, 메신저 등을 통해 대리 행사 가능 →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일 듯





## 2.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신용정보주체 본인
  -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농협, 보험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2.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전송 요구를 받은 기관의 의무
-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machine readable format) 전송하여야 함.
-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 전송을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체없이 거절/정지/중단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전송요구 방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개념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업
-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도 본인정보관리업 등록제도가 포함됨.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허가 요건

- 물적 요건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 (인력 요건은 배제됨)
- 자본금 요건 : 5억원 이상 (완화)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 임원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조 준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 금융기관의 50% 이상 출자 요건 미적용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허가가 불필요한 업무 범위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신용정보에 해단 접근 · 조회 ·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 · 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ex: 개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를 기업 내부 신용 평가 등에만 활용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저장 · 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개인신용정보를 단순 관리할 수 있는 UI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가 금융회사 등 상거래기업의 서버에 직접 저장되지 않고 정보주체 이외에는 입력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접근/조회할 수 없는 경우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업무 :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 (ex.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자문업
  - 신용정보업
  -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겸영/부수업무
  -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
  -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부수업무 :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
  -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고지요구, 열람요구, 정정청구 등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행위 규칙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경영/부수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 마련
  -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편향·왜곡하여 분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항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내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행위 규칙

-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아래 요건 충족 필요)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함.
  -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행위 규칙
- 금지행위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행위 규칙

- 금지행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 3.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 행위 규칙
- 금지행위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행위 규칙
-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의 규모, 상거래 빈도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계기관(농협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비용 부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기록 보관
  -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함.
- 통지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함.

